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기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011

발의연월일: 2020. 12. 1.

발 의 자: 강기윤·김선교·김희국

이명수・윤영석・김예지

박성중 · 김태호 · 김희곤

이종성 · 김도읍 · 최형두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, 구급차등에 보관하는 의약품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에도, 적정 상태 유지에 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 장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구급차등에는 구급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를 함께 갖추도록 함으로써, 응급환자의 생 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1항 중 "구급의약품"을 "구급의약품(구급의약품의 적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를 포함한다. 이하 이조에서 같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구급차등의 장치 및 설비 장착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련 장치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(구급차등의 장비) ① 구급	제47조(구급차등의 장비) ①
차등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처	
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	
및 <u>구급의약품</u> 등을 갖추어야	<u></u> 구급의약품(구급의약품의 적
하며,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·의	정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하여
료기관 및 응급의료지원센터와	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를 포
통화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	<u>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</u>
추어야 한다.	
	,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